

문서번호	행정지원과-32209
결재일자	2014.1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인사담당	행정지원과장	행정국장		
김소영	윤이남	김진동	11/17 손정수		
협 조	감사담당			임근수	
	총무담당			현병구	

2014년도 하반기
휴직 공무원 복무실태 점검계획

2014 . 11.

행 정 국
 행정지원과

2014년도 하반기 휴직 공무원 복무실태 점검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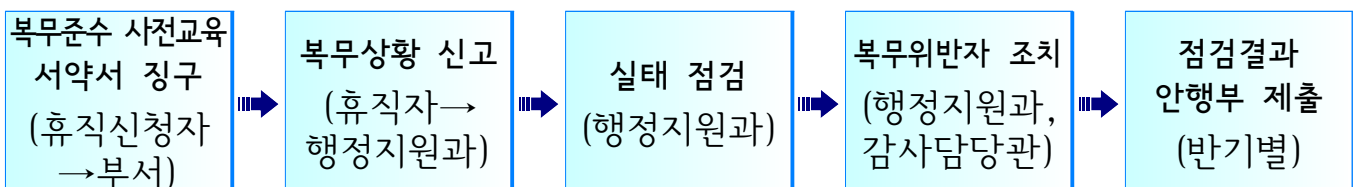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13.5.6) 이후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복무실태를 점검코자 함

1 추진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휴직자 복무관리 등)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16호, '13.6.13)
- 휴직 공무원 복무관리 강화계획(행정지원과-22174호, '13.8.5)

2 점검 방향

-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복무실태 중점 점검
 - 휴직 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
 - 휴직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 목적 달성에 위배되는 행위 금지
- 휴직자 개인별 복무상황 신고서 징구와 함께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조사 병행
- 휴직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복직명령 조치와 함께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징계의결 조치



3 점검 개요

○ 점검 일 : '14. 11. 19(수) ~ 12. 2(화), 14일간

○ 점검대상 : 총 62명

- '13.5.6이후(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이후 휴직 또는 휴직연장 공무원으로
- 법 제63조제1항1호(질병) 및 제2항제2호부터 제6호에(해외유학, 연수, 육아, 간병, 배우자동반) 의해 '14.11.17현재 휴직중인 공무원

구분	계	요양	유학	연수	육아	가사간병	배우자동반
계	62	11	1	0	47	0	3
행정직군	52	11	1	-	38	-	2
기술직군	10	-	-	-	9	-	1
관리운영직	0	-	-	-	-	-	-
별정직	0	-	-	-	-	-	-
임기제일반직	0	-	-	-	-	-	-

○ 점검 자 : 6명(직렬별 담당자)

행정직군	기술직군 관리운영직군	별정직	임기제일반직
전영훈, 김소영	박기훈, 나예주	허성재, 원유경	

○ 점검방법

- 휴직자가 제출한 복무상황 신고를 기초로 점검하되,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의심 가는 자는 현장점검 병행

○ 점검사항 :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 비상연락망 점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 휴직 전 사전교육(소속부서장 시행) 실시 여부
- 휴직자 개인별 복무상황 보고서 직접 작성·징구

-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모든 종류의 휴직은 11월 보고대상임
- 휴직별 중점 점검 사항 및 추가 증빙서류
 - ▶ 질병휴직 : 진단서, 출입국 사실증명 등
 - ▶ 해외유학휴직 : 출입국 사실증명, 휴직사유 종료(학기 미등록)여부 등
 - ▶ 육아휴직, 가사휴직 : 육아나 간병과 상관없는 해외 체류 여부, 영리
업무금지 의무위반(개인사업종사) 등
 - ▶ 배우자동반휴직 : 출입국 사실증명 등
- 증빙서류 추가 확인후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조사
 - ▶ (예시) 가사휴직자 소득증명원 징구 후 소득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4 행정 사항

- 부서 협조사항 : 휴직 예정자 사전교육 및 서약서 징구
 - 휴직신청 공문 제출 시 사전교육 실시 및 서약서 제출
- 향후계획 : '15년도 상반기 휴직자 복무실태 점검 실시 - '15. 5월

- 붙임 1. 관련규정 1부.
 2. 휴직자 근무 실태점검 결과 보고서 양식 1부
 3. 휴직자 복무상황 보고서 양식 1부.
 4. 서약서 서식 1부. 끝.

휴직 공무원 복무관리 관련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휴직자 복무관리 등) ① 임용권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 사유와 달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거나 복직 후 제1항에 따른 복직 명령 사유가 적발된 경우에는 제33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은 제33조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6>

③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5.6>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16호, '13.6.13)

사. 휴직자의 복무관리(임용령 제38조의17)

○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의 정의

-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 함은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거나 당초 휴직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함

○ 휴직 실태점검

- 임용권자는 휴직 공무원이 휴직의 목적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기간에는 그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이 경우 복무상황 보고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야 함
- 정기점검은 매 반기별로 하되, 그 결과를 각각 1월 15일, 7월 15일까지 붙임 제1호 서식을 첨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 법 제63조제1항1호 및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 기간 중 붙임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복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복무상황 보고는 매 반기별로 하되, 법 63조제1항제1호와 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휴직은 매 분기별로 하고, 복직하는 경우와 반기 및 분기별 보고시점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시에 하여야 함. 다만, 임용권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고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휴직내용 심사 및 검증

- 임용권자는 휴직 실태점검과 복무상황 보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심사함
 -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기간
 - 고의성 여부
 -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 여부
 -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임용권자는 심사과정에서 심사대상자에게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심사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
- 임용권자는 심사결과, 심사대상자가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임용령 제38조의17에 따른 복직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정도가 과도하여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임용권자는 기타 휴직내용의 검증에 관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휴직자의 복무관리에 관한 적용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 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2013.5.6.) 이후에 휴직하거나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함

휴직자 근무 실태점검 결과 보고서

□ 직군명 : 00직군

□ 자체점검 개요

가. 점검기간 : 2014. . . ~ . ()

나. 점검인원 : 5급 000의 _명

다. 점검대상 : 총 명

구분	계	요양	유학	연수	육아	가사간병	배우자동반
계							
행정직군							
기술직군							
연구·지도직							
관리운영직							
임기제일반직							

라. 점검내용 : 휴직전 사전교육 여부, 휴직자의 복무상황 신고 여부, 휴직의 충실성 여부(학점이수상황 등) 등 휴직 전반

□ 휴직의 목적외 사용 적발사례 및 조치결과 (해당시 작성, 작성예시)

소 속	적발 인원	휴직 종류	적발 시점	적발사례	조치결과	비고
	0명	육아 휴직	휴직 종료 후	• 휴직 대상 자녀는 국내에 두고 0개월가량 해외체류	• 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급기간 산입 제외, 육아휴직 수당 환수 • 징계의결 요구하여 징계(정직 1월) • 근평 및 성과급 최하위 부여	
	0명	유학 휴직	휴직 종료 후	• 휴직사유 종료(학기 미등록) 후 신고없이 6개월간 해외에서 체류 중	• 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급기간 산입 제외, 육아휴직 수당 환수 • 징계의결 요구하여 징계(견책) • 성과급 최하위 부여	
	0명	육아 휴직	휴직 중	• 휴직 중 영리업무금지 의무 위반(개인사업종사)	• 복직을 명하고 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급기간 산입 제외, 육아휴직 수당 환수 • 징계의결 요구하여 징계(견책)	
	0명	가사 휴직	휴직 종료 후	• 모친 가사휴직 중 0개월 가량 해외 체류	• 복직 명하고 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급기간 산입 제외, 육아휴직 수당 환수 • 징계의결 요구하였으나 정상참작하여 경고 조치	

* 해당 기간 중 적발된 휴직의 목적외 사용 적발사례 및 조치결과(인사관계법령상 조치사항 외 기관별 조치한 별도의 불이익 조치 모두 포함)에 대해 작성

□ 기타 건의사항 등

* 안행부에 건의사항이 있거나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있는 경우 개조식으로 작성

서 약 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휴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여 지방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겠습니다.
2. 휴직기간 중 _개월마다 휴직사유의 계속 여부를 기관(부서)장에게 신고하겠습니다.
3. 휴직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하지 않겠으며,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시 복직명령 또는 징계의결 요구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숙지하겠습니다.
4.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복직하겠으며, 30일 이내에 복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성북구청장 귀하